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함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4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 성함제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평남, 문장길, 박상구, 박순규, 양민규, 이광성, 이광호, 임종국, 최웅식, 황규복, 황인구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학생들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남용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위법령인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남용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2019.12.10.에 공포하여 2020.6.11.부터 시행하고 있어 「학교보건법」에서 수정된 ‘보건교육’ 정의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건교육의 정의에 마약류의 오용·남용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약물” 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생 략)</p> <p>1. (생 략)</p> <p>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u>약물 오·남용</u>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과 건강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마</u> <u>약류를 포함한 약물</u> ----- ----- ----- ----- -----.</p>